

대구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27332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27332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34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윤

피고, 항소인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변론 종결 2022. 11. 16.

판결 선고 2022. 12. 1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349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 부분 송달일은 최종송달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4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4.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으로써 E의 과점주주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C, D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위 피고 C, D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 C, D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위와 같은 계약은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고 C, D은 피고 B이 부담하는 주식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C, D 간의 이 사건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3) 피고 B이 2019. 12. 30.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0. 5. 13. 1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남은 매매대금은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4)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E 주식을 피고 B에게 45,000주, 피고 C에게 35,000주, 피고 D에게 15,000주로 각 분할하여 매도하는 후속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의 주식매매대금채무는 분할채무로서 남은 잔금 2억 7,000만 원은 위 주식 수의 비율대로 분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할채무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주식매매대금채무는 균등비율로 나눈 분할채무이다.

나. 계약 당사자 부분 주장 및 이 사건 계약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2) 계약 당사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한 사람은 피고 B이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도 위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C, D을 보거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Q에게 "피고 C 이름으로 주식대금 받은 적도 없는데, 명의신탁 해놓은 사항으로 권리사항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와 달리 피고 B만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 외에 피고 C, D도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과 같이 계약 명의인이 중시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계약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들 주장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 측(피고 C의 배우자 Q)에게 계약서 공증을 요구하면서 "B 혼자만의 각서로는 공증을 못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원고가 피고 B에게만 계약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④ 피고 C, D은 모두 2019. 10. 15.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7. 법인등기가 마쳐지기까지 하였다.

⑤ 피고 B은 2020. 7. 28. R과 사이에 E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에 피고 C, D이 소유한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전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C, D 부분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탈하기 위해서 피고 C, D을 형식상 양수인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 D이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주식매매대금채무 담보를 위한 E 소유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C, D 부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배임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지(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및 라.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또는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및 '3)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계약 매매대금 채무의 중첩관계(분할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따른 분할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주식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E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45,000주를 피고 B에게 4억 5,000만 원에, 35,000주를 피고 C에게 3억 5,000만 원에, 15,000주를 피고 D에게 1억 5,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맞지만, 그 도장은 대표이사 변경 업무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던 것인데 피고들이 위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대표이사 변경 업무를 위임받았던 법무사 S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원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던 원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매매대금 등 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등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거나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처리 업무 등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들의 주식매매대금 잔금채무를 분할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을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 사이의 주식 지분비율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데 반하여, 주식매매계약서는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인수할 주식수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재만으로 보면 주식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약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와 피고들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있어 별도의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② 오히려 피고들 스스로도 주식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은 형식적 기재일 뿐이고 7억 7,000만 원을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는바, 주식매매계약서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 채무의 성격을 분할채무로 합의하였다면, 피고들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의 중도금 2억 원 변제 당시 피고들 중 누구의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지정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법원 증인 S은 원고로부터 E의 임원변경등기 업무를 위임받았고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들 역시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주식변동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주주명부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들 개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임원변경등기 업무 혹은 세무서 신고 및 주주명부 정리 등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다.

⑤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2019년'이라고만 기재되어 그 작성일이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행정청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구체적 작성일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그 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원본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2019. 8. 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첨부한 것인 점 역시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행정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채무의 중첩관계 가)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역 사업에 종사한 상인으로써, 피고 B이 법인이 E을 인수하는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57조 제1항, 제47조2) 가 적용되어 피고들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상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중 1인만이 상인이고 나머지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만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채무가 연대채무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피고들이 각 인수할 주식수 및 부담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채무를 분할하여 약정하지 않은 점, ② 가분채권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은 원고 소유의 주식, E의 사업권 등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E의 경영권을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점, ③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로, 피고 C, D은 E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후 등기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이 E의 공동경영을 예정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피고 B은 계약금 3억 원 지급 당시 피고들 중 누구의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연대채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 주식 등을 전체로 매도하고, 피고들도 그 주식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사 하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는 피고들의 연대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들의 균등분할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홍은아

판사박지원

1) 피고들 채무의 중첩관계에 관하여는 아래 '4. 피고의 주장' 항목에서 살펴본다.

2)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